

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

자료제공 :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

- 공정거래위원회는 『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』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음
[입법예고기간 : 2000. 9. 9 ~ 9. 29(20일간)]

1. 公正去來委員會 調査의 實效性 提高

- 2001. 2. 4 만료되는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의 행사기한을 연장
- 金融機關을 媒介로 한 지원, 域外펀드를 통한 지원 등 최근 不當內部去來 수법의 知能化·高度化 추세에 철저 대비
 - * 2000. 7. 28 경제장관간담회시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의 延長 결정
- 현행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 국한되어 있는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의 適用對象에 위장계열사 조사도 포함
- 僞裝系列社 調査에는 주식매입자금의 출처,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 확인 등이 필수 불가결한데 이는 金融去來情報要求權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
- 자료미제출, 조사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履行強制金 부과

2. 不當共同行爲 申告者에 대한 免責規定 적용확대

-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대상자로 현행 不當共同行爲 申告者외에 “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調査에 협조한 자”를 추가
- 申告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서 필요적 감면사유로 변경하여 면책부여의 확실성 제고

3. 持株會社 制度의 效率的 運用

- 벤처기업을 子會社로 두는 벤처持株會社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무중 子會社持分率 制限의 적용을 제외
-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經營·支配하는 벤처지주회사가 용이하게 설립될

수 있도록 規制緩和

- 持株會社の子會社 持分率要件 보완
- 지주회사 設立以前에 株券上場된 법인(협회등록법인 포함)에 대하여 자회사 持分率要件을 30%로 완화
* 現행규정상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%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, 자회사가 '99. 4. 1(지주회사제도 시행일)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 30%이상 소유 가능
-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現行 現物出資 방식 외에 商法上 會社分割을 통해 지주회사로 轉換하는 경우에도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부여
- 物的分割, 人的分割 및 分割合併 등을 통해 분사화하는 경우 행위제한의무를 유예(1년간 負債比率制限 예외인정, 2년간 持分率制限 예외인정 등)
- 30대집단 소속회사가 사업연도중 주식취득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轉換하고자 하는 경우 出資總額制限 規定 적용 猶豫期間 부여
- 주식취득과정에서 出資總額制限規定을 항상 위반하게 되는 문제 해소

4.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개념 보완

- 당해상품의 再販賣價格維持行爲만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 現行 규정을 당해상품을 가공하는 단계의 가격유지행위도 포함되도록 보완

(예) 외식업 프랜차이즈사업(예:햄버거 등)에서와 같이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가맹점이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, 가맹본부가 완제품에 대해 가격고정행위를 하면 재판가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금지

5. 기 타

- 中小企業, 개인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公定거래관련 相談과 申告代行 등을 專門적으로 수행하는 公正去來士制度를 도입
- 資格要件 : 公定거래법 등에 관한 資格試驗 合格者
- 단, 기존의 타 전문자격인 제도와는 달리 經歷公務員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不認定
-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송결과에 따라 다시 是正措置 또는 課徵金賦課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
- 課徵金 체납 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을 맞추어 課徵金 환급시 가산금 지급근거 신설